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88
----------	-------

발의연월일 : 2026. 8. 21.

발 의 자 : 서영석 · 윤준병 · 이해식
윤후덕 · 한정애 · 안태준
박용갑 · 윤종균 · 노종면
홍기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진찰과 검사를 의료급여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급여기관이 환자로부터 채취한 검체에 대한 검사를 다른 의료급여기관 등에 위탁하는 경우, 검체검사의 위탁·수탁 범위와 절차, 방법 및 위탁·수탁기관에 대한 관리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에서 수행한 검사비용을 포함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받는 구조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검사비용 지급이 지연되거나 적정한 비용이 지급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이에 의료급여에 따른 검체검사의 위탁·수탁 범위·절차·방법 및 위탁·수탁기관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

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간 검체검사 관리체계를 일관되게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의료급여기관이 다른 의료급여기관 등에 검체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수탁기관이 수행한 검사 관련 비용을 공제하여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탁기관의 검사비용 수급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검체검사 위탁·수탁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11조제7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검체검사의 위·수탁에 대한 관리 등) 의료급여 중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이하 “검체검사“라 한다)의 위·수탁 범위·절차·방법 및 검체검사 위·수탁기관 관리 등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의료급여기관“으로 본다.

제11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이 다른 의료급여기관 등에 검체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수탁기관이 수행한 검사 관련 비용을 공제하여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기관이 아닌 기관의 검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기관으로서 검체검사를 수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는 수탁한 검체검사와 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제9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본다.

제3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실시한 검체검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9조의2(검체검사의 위·수탁에 대한 관리 등) 의료급여 중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이하 “검체검사”라 한다)의 위·수탁 범위·절차·방법 및 검체검사 위·수탁기관 관리 등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의료급여기관”으로 본다.</u>
제11조(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① ~ ⑥ (생략) <u><신 설></u>	제11조(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이 다른 의료급여기관 등에 검체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수탁기관이 수행한 검사 관련 비용을 공제하여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u>
<u>⑦</u>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여비용의 청구, 심사, 지급 등의 방법 및 절	<u>⑧</u> ----- 제7항----- ----- -----

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⑧ (생 략)	----- -----.
	⑨ (현행 제8항과 같음)